

광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가단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바꾸기 위하여 피고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수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로부터 C EQ900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 2020. 6. 13. 10,000,000원 + 2020. 6. 14. 10,000,000원 + 2020. 6. 20. 14,000,000원 + 2020. 7. 2.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8.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양수인이 주식회사 E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소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교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 송금된 돈 중 27,000,000원이 주식회사 F 계좌에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